



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사용하는 보험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개선하여 2012년 4월 1일부터 동 개선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함.

● 또한, 금감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.

■ 금번 보험약관 개선 내용에는 단체보험 판매중단 후 피보험자의 추가가입 허용 등 6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음.

- 피보험자 변경이 가능한 단체보험의 경우 단체보험 가입 후 동 단체보험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피보험자의 추가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함.
-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 해지 전 병력사항 및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등의 이유로 부활을 거절하는 행위를 제한함.
-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부합하기 위하여 ‘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’ 담보의 보험약관상 대중교통수단 정의에 ‘여객수송용 선박’을 포함함.
- 상해 및 질병보험 이외의 보험에도 지정 대리청구인제도¹⁾의 필요성이 존재함에 따라 일반손해보험 등의 타 보험에도 동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함.
- 근로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피보험자(고용주)와 피해자(근로자)간 종속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가지급금 청구권 행사가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지급금 청구권을 보험약관에 명시함.
- 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의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상대상에 응급처치, 호송 등의 손해방지 비용을 포함함.

(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, 금감원, 3/28)

1)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되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지정 대리청구인이 수익자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임.